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. 10. 8 선고 2021가단202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망 A의 소송수계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태중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빈

피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

담당변호사 최제현, 임진식, 심지현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자빈

변론 종결 2024. 7. 16.

판결 선고 2024. 10. 8.

주 문

1, 원고(선정당사자)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

1/5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9. 7. 29. 접수 제14609호로 마친

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B 및 나머지

선정자들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5 지분에 관하여 각 2019. 7. 29.자 약정을
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, 선정당사자와 함께 '원고들'이라고만 한다)과 피고는 A의
자녀들이다.

나. A은 2019. 7. 29. 아들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(이하 '이
사건 증여'라 한다),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9. 7. 29.
접수 제14609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,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
지분 즉,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D 앞으로 2021. 9.
30.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1. 10. 1. 접수 제20139호로
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다. A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. 2. 7. 사망하였고(이하, '망인'이라 한다), 원고들은
망인의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.

라. 한편, 아래 <문서1>과 같은 내용의 문서(갑 제2호증, 이하 '이 사건 각서'라 한다)가 작성일자
'2019. 7. 29.'로 기재되어 작성되었고, 문서의 아랫부분에는 피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
날인되었으며, 그 옆에는 무인이 찍혀 있다. 또한, <문서2>와 같은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문서(갑
제3호증, 이하 '이 사건 확인서'라 한다)의 아랫부분에는 작성일자가 '2021. 11. 1.'로 기재되어
있고, 그 밑에는 피고 이름 및 망인의 이름 옆에 각 무인이 찍혀 있다.

각서인: C(피고)

각서인은 부 A(망인)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
각서합니다.

<이행사항>

1. 각서인은 2019년 8월부터 한달에 2번 이상 부의 집을 방문하여 건강 및 생활상태를 살핀다.
2. 각서인은 2019년 8월부터 부에게 매월 1,800,000원씩의 생활비를 지급한다.
3. 각서인은 부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할시 병원비와 간병인의 간병비를 부담한다.
4. 위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,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.

<문서1>

<문서2>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1, 2, 갑 제5호증의 1 내지 7, 갑 제8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망인을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되, 각서에 기재한 사항을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이전하기로 약정한 해제조건부 증여이다. 그런데 피고가 망인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이행각서에서 정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한다.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또한,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위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으로부터 단순증여 받은 것일 뿐이지 부담부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. 설령 이 사건 증여가 부담부증여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3. 판단

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조건을 부담시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각서(갑 제2호증)나 그러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(갑 제3호증)가 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다.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, 증인 E의 증언, 선정자 원고 F 및 피고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갑 제3호증(확인서)의 작성경위나 피고의 자필기재 과정에 대한 선정자 F의 불분명한 진술과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 형식, 이 사건 변론에서 관찰된 피고의 지적능력이나 태도, 원고들과 피고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,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들의 요구 또는 계획에 의하여 임의의 시점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, 즉, 원고 F은 갑 제3호증 작성 당일 피고를 망인의 집으로 불러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갑 제3호증을 망인이 불러 주는대로 쓰거나 망인이 쓴 것을 베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,¹⁾ 피고가 '증여', '무상증여'나 '간병'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고려해보면, 갑 제2호증이나 갑 제3호증은 원고들 주장의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점, 더욱이 갑 제2호증(이행각서)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 당시에도 현출된 바도 없는 점(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당시 절차 관련 서류 등을 작성, 대행한 법무사인 증인 E은 등기과정 당시 이 사건 증여에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부담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), 따라서 이 사건 각서가 과연 이 사건 증여 당시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, 여기에 이 사건 소가 망인 사망 약 2개월 2주전에 접수되었던 점,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소송의 의도는 D의 배신 가능성에 대비한 피고의 노후를 위한 원고들의 지분권 확보라는 것인데, 원고들 특히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선정자 F은 피고의 배우자 D이 베트남 국적이라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경멸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, 이 사건 소송은 망인 본인의 의사²⁾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들의 D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어 선정자 F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³⁾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피고의 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증여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 주장의 조건 내지 부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

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. 결국 망인과 피고 사이에 해제조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배예선

별지

- 1) 선정자 F에 대한 당사자신문독취서 제5쪽, 제23쪽, 제24쪽
- 2) 망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 기재와 같이 망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부담케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, 오히려 본인의 사후에 피고의 안위를 걱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인다.
- 3) 원고 F에 대한 당사자신문독취서 10, 14쪽, 20, 28쪽, 29쪽, 30쪽